

인 천 지 방 법 원

결 정

사 건 2016고단4070 추행

피 고 인 1. 최○○, 종업원

주거

등록기준지

2. 김○○, 대학생

주거

등록기준지

주 문

위 사건에 관하여 균형법 제92조의6 중 “그 밖의 추행”에 관한 부분의 위헌 여부에 관한 심판을 제청한다.

이 유

위 법률조항은 재판의 전제가 될 뿐만 아니라, 별지 기재와 같이 위헌이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으므로, 직권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2. 17.

판사 이연진

별 지

1. 사건의 개요 및 위헌심판제청 대상 법률조항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최○○

피고인은 2015. 6. 25. 인천 계양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김○○의 발기된 성기를 손으로 붙잡고 위아래로 흔들어 김○○으로 하여금 사정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때부터 2016. 5. 14.경 사이에 11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김○○과 각각 추행하였다.

2) 피고인 김○○

피고인은 2015. 6. 25. 인천 계양구에 있는 최○○의 집에서 최○○이 피고인의 발기된 성기를 손으로 붙잡고 위아래로 흔들게 하였고 피고인은 사정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때부터 2016. 5. 14.경 사이에 11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최○○과 각각 추행하였다.

나. 사건의 경과

피고인들은 별지 각 범죄일람표 기재 행위 당시 일반 육군 사병이었다. 군 검찰관은 2016. 6. 14.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군형법 제92조의6(추행, 2년 이하의 유기징역)을 적용법조로 하여 위와 같이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2016. 6. 22. 피고인들이 전역함에 따라 제1군단 보통군사법원은 같은 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으로 이송하였다. 검사는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징역 2년을 구형하였다.

다. 위헌심판제청 대상 법률조항

[제청대상조항]

위헌심판제청 대상 법률조항은 군형법 제92조의6(2013. 4. 5. 법률 제11734호로 개정된 것) 중 “그 밖의 추행”(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에 관한 부분이다.

군형법 제92조의6(추행)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관련조항]

- 구 군형법(1962. 1. 20. 법률 제1003호로 제정되고, 2009. 11. 2. 법률 제98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2조(추행) 계간 기타 추행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구 군형법(2009. 11. 2. 법률 제9820호로 개정되고, 2013. 4. 5. 법률 제117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2조의5(추행) 계간(鷄姦)이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군형법(2013. 4. 5. 법률 제11734호로 개정된 것)¹⁾

제92조의6(추행)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조(적용대상자) ① 이 법은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군인에게 적용한다.

② 제1항에서 "군인"이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兵)을 말한다. 다만, 전환복무(轉換服務) 중인 병은 제외한다.

라. 재판의 전제성

1) 이 사건 법률조항을 포함하여, 강간과 추행의 죄를 규정한 군형법 제15장은 2013. 4. 5. 이후로 개정된 바 없다.

군 검찰관은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법조로 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소를 제기 하였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본안사건 재판의 결론을 달리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위헌심판제청은 본안사건의 전제성이 있다.

2.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성 검토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개정되기 이전의 법률조항 중 “그 밖의 추행”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헌법재판소 2016. 7. 28. 선고 2012헌바258 결정(이하 ‘2016년 선례’)뿐 아니라, 헌법재판소 2002. 6. 27. 2001헌바70 결정(이하 ‘2002년 선례’), 헌법재판소 2011. 3. 31. 선고 2008헌가21 결정(이하 ‘2011년 선례’) 또한 이 사건의 선례인바 2002년·2011년 선례 모두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개정되기 이전의 법률조항 중 “기타 추행”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다음과 같이 위헌의 소지가 크다.

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됨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군인 간의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 행위에 형벌을 부과할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강제력 행사 여부, 행위의 정도, 행위의 주체·객체·시간·장소 등에 관하여 아무 기준 없이 그 적용범위를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수범자는 물론 법집행기관, 법적용기관으로서도 법률조항만 보고서는 어떤 행위가 군 전투력 보존을 위한 군기확립이라는 보호법익에 직접적인 위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인지를 알기가 어렵다.

2009. 11. 2. 개정되기 전 군형법은 제15장 ‘기타의 죄’에서 제92조(추행)에서 ‘계간 기타 추행을 한 자’만을 처벌하다가, 2009. 11. 2. 개정으로 제15장을 ‘강간과 추행의 죄’로 규정하면서 제92조(강간)·제92조의2(강제추행)·제92조의3(준강간·준강제추

행)·제92조의5(추행)·제95조의6(강간등상해치상)·제95조의7(강간등살인치사)로 세분화하였으며 제92조의4(미수범)·제92조의8(고소)도 신설되어 처벌조항이 세분화되었다. 나아가 2013. 4. 5. 개정으로 성폭력범죄의 객체가 ‘부녀’에서 ‘사람’으로 확대되고(제92조), ‘유사강간’을 처벌하는 규정이 신설되고(제92조의2), 동성 간의 성행위를 비하하는 용어인 ‘계간’이 ‘항문성교’로 변경되며(제92조의6), 기존의 친고죄 규정이 삭제되었다(제92조의8). 따라서 폭행이나 협박이 수반되는 강제행위는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으로 처벌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법조문 체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일단 강제성 없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성적(性的) 행위를 처벌하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성폭력 범죄에 관한 형법이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별법 등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폭행이나 협박에 이르지 않은 위계·위력에 의하여 여전히 상대방에 의사에는 반하는 추행행위도 균형법상 처벌의 필요가 있는지,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의 처벌범위에 포함되는 것인지를 알 수가 없다. 균형법임을 감안하더라도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추행행위와 그렇지 않은 합의에 의한 성적 행위 사이에는 가벌성의 차이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를 동일한 법률조항에 근거하여 처벌하는 것이 타당한지도 의문이다. 나아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인바, 이처럼 이 사건 법률조항이 상정하는 가벌성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명확히 알지 못하는 이상 적정한 양형을 도출하는 것 또한 가능하지 않다.

나아가 “그 밖의 추행”이 “항문성교”에 준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에 이르지 않는 보다 행위태양의 적극성이 떨어지는 행위도 처벌하는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다. 항문성교의 정도에 이르지 않은 행위도 처벌하는 것이라면, 어느 정도의 행위까지 처벌하는 것인지, 이 사건 법률조항이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법률해석이 더욱 쉽지 않다. 형법상 강제추행은 확립된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이른바 기습추행으로서 순간적으로 상대방의 신체에 접촉하는 행위태양도 다른 구성요건을 갖춘 경우 형사처벌하고 있어, 물론 강제성이 없다는 차이는 있지만 “그 밖의 추행”의 가벌성과 양형을 정함에 있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상정하고 있는 행위 강도가 어디까지인지를 해석하기가 더욱 고민스럽다.

나아가 기존의 “계간(鷄姦)” 부분이 “항문성교”로 개정됨으로써 사전적 의미는 분명해졌지만 죄형법정주의 상 명확성 원칙 위반 여부에 관하여 기존에 지적된 문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동성 간의 행위로 해석되는 “계간”이 성(性) 중립적인 “항문성교”로 개정되었음에도 “그 밖의 추행”을 2011년 선례의 보충의견에서 명시하는 바와 같이 여전히 동성 간의 행위로만 해석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그렇게 볼 만한 문리해석의 여지가 없어졌으므로 이성 군인 간의 성적인 행위도 처벌하는 것으로 처벌범위가 넓어졌다고 해석하는 전제에서 이 사건과 같은 동성 군인 간 행위의 가벌성 및 양형을 평가하여야 하는지, 형사재판에서의 법률해석이 더욱 혼란스럽고 명확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수범자에게 예측가능성을 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법을 집행하고 적용하는 기관의 자의적인 법률해석을 초래하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

나. 균형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의 항문성교 및 그 밖의 성적(性的)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성적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신체의 자유를 침해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의 불명확성이 중대하여 “항문성교”는 물론

“그 밖의 추행” 행위를 강제성이 없는 합의에 의한 성적 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도 될지 어려움이 있지만,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적어도 당사자 간 자발적 합의에 의한 성적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분명하다. 나아가 이 사건 법률조항이 불명확하여 이성 간의 성행위를 제외한 나머지 항문성교 및 그 밖의 추행행위만을 처벌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지만,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이 동성 간 특히 남성과 남성 간의 성적 행위이기 때문에 이하에서는 이러한 동성 간의 합의된 성적 행위를 중심으로 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 수범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본다. 군인이 민간인보다 더 많은 기본권 제한을 수인하는 것이 불가피함을 고려하더라도, 형벌조항의 강력하고 강제적인 기본권 제한 효과에 비추어 형벌법규 수범자의 기본권 침해 여부는 관련된 기본권에 관하여 엄격하게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군 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 확립을 목적으로 동성인 군인 간의 합의된 성적 행위라도 이를 금지하고 형사 처벌하는 것이므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수단의 적합성을 본다. 군대에서 군인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특히 그 행위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며 나아가 처벌에 이르는 것은, 소속 군인의 규율준수와 명령복종을 바탕으로 하는 군이라는 공동사회에서 기강을 확립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소수의 일탈행위를 부르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군인에게 일률적으로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군인 간의 성적인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앞서 본 입법 목적을 달성하는 데 어느 정도 기여한다는 점에서 그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할 수 있다.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 균형성을 본다. 강제에 의하지 않고 공연성도 없는 상태에

서 행하는 군인 간의 합의된 성적 행위가 군의 전투력 보존에 직접적인 위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당해 군인의 성별·성적 지향·성별 정체성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가 국민개병제 하에서 징집대상자의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을 군 면제 사유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 군 복무를 강제하면서도 시간과 장소에 관한 제약 없이 군인 간의 합의된 성적 행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이들의 성적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 특히 형벌의 보충성 원칙에 비추어 군이라는 공동사회에 끼치는 직접적인 위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구체적 법익에 대한 명백한 침해가 없음에도 최후수단인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최소침해성에 위배되는 과잉 규제이고, 법익 균형성도 갖추지 못하였다.

다. 균형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의 항문성교 및 그 밖의 성적(性的)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수범자를 그 성별·성적 지향·성별 정체성에 따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이므로 평등원칙에도 위배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의 불명확성이 중대하여 이성 간의 성행위를 제외한 나머지 항문성교 및 그 밖의 추행행위만을 처벌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일단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이 동성 간 특히 남성과 남성 간의 성적 행위이기 때문에 이하에서는 이러한 동성 간의 합의된 성적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를 본다.

1) 평등원칙 위반 여부에 관한 심사기준

헌법재판소 1999. 12. 23. 선고 98헌마363 결정 이래 헌법재판소가 기준으로 들고 있는 바와 같이 평등원칙 위반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엄격한 심사척도에 의할 것인지,

완화된 심사척도에 의할 것인지는 입법자에게 인정되는 입법형성권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즉 자의심사의 경우에는 차별을 정당화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기 때문에 그에 해당하는 비교대상 간의 사실상의 차이나 입법목적을 발견하거나 확인하는 데 그치는데 반하여, 비례심사의 경우는 단순히 합리적인 이유의 존부 문제가 아니라 차별을 정당화하는 이유와 차별 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심사, 즉 비교대상 간의 사실상의 차이의 성질과 비중 또는 입법목적의 비중과 차별의 정도에 적정한 균형관계가 이루어져 있는가를 심사한다.

헌법재판소는 이처럼 엄격한 심사기준과 완화된 심사기준,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완화된 엄격심사기준을 제시하는바, 그 중 엄격심사가 적용되는 영역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설명은 다음과 같다. 즉 ①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이다. 헌법이 스스로 차별의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되는 기준을 제시하거나 차별을 특히 금지하고 있는 영역을 제시하고 있다면 그러한 기준을 근거로 한 차별이나 그러한 영역에서의 차별에 대하여 엄격하게 심사하는 것이 정당화된다는 것이다. ② 다음으로 차별적 취급으로 인하여 관련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게 된다면 입법형성권은 축소되어 보다 엄격한 심사척도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본다.

2) 이 사건의 경우 - 엄격한 심사척도에 의하여야 함

그러므로 이 사건이 앞서 본 엄격심사적용영역에 해당하는지를 본다.

먼저 위 ①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군인 간의 합의된 성적 행위를 제한 없이 처벌함으로써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는 '성별'에 따라 차별하는 경우이다. 이 때 성별(性別)을 단순히 생물학적 성 즉 섹스(sex)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좁게 해석하는 것은 성(性)에 관한 변화된 사회 인식과

국제적 인권기준을 외면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11조의 성별은 섹스(sex)뿐만 아니라 성적 지향·성별 정체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성별의 사전적 의미는 ‘남녀나 암수의 구별’인바, 성(性)을 구별함에 있어서 생물학적으로 남성인지 여성인지만을 일도양단하듯 유일한 구별 표지로 하는 것은 동성애자·양성애자·트랜스젠더 등 우리 사회에 엄연히 존재하는 성소수자의 기본권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서 특히 헌법과 법률을 해석함에 있어서 취할 태도가 아니다. 인간에게 성(性)은 개인의 인격형성과 관련된 핵심적인 특징이므로, 소수의 누군가에게는 단순히 생물학적인 성만이 아니라 성적 지향, 즉 어떤 상대방에게 성적인 호감을 갖는지와 성별 정체성, 즉 자신의 성을 스스로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에만 그 사람의 성(性)을 구별할 수 있고, 이는 성별의 사전적 의미에도 부합하므로, 이러한 헌법해석이 헌법이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는 영역을 임의로 넓힌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위 ②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을 동성 간의 행위만을 처벌하는 것으로 해석할 경우 이는 당사자의 합의된 성적 행위를 시간과 공간의 제한 없이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시 최후수단인 형사적 제재를 가하는 것으로서 수범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신체의 자유라는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을 초래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평등원칙 위배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는 엄격한 심사척도를 적용하여야 한다.

3) 평등원칙에 위배됨

동성인 군인 간의 합의된 성적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무엇보다 그러한 행위가 사회의 다수인 이성애자들의 성적 행위, 즉 전형적인 남성과 여성의 이성애에 기반을 둔

성적 행위를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것으로, 그렇지 않은 성소수자의 성적 행위 '비정상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태도가 입법 및 법률해석에 반영된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편견은 인종·출신·피부색에 따른 편견과 마찬가지로 소수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신체의 자유를 제한할 정당한 근거가 될 수 없다. 나아가 이처럼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성적 행위를 정상과 비정상으로 구별하여 해석하는 것은 법 해석기관 스스로 특정한 성적 지향·성별 정체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공식화하고 그로 인한 차별을 국가가 승인하는 결과가 된다. 특히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은 문언 상 이성애와 기반을 둔 성적 행위와 그 밖의 성적 행위를 달리 취급할 아무런 구성요건표지를 가지고 있지 않은바 그럼에도 이를 동성 간 특히 남성과 남성 간의 성적 행위만을 처벌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평등원칙 위반에 따른 위헌성이 더욱 커지는 것이 된다.

특히 여성 군인이 점차 증가하는 현재 우리 군 현실에 비추어 이성 간의 성적 행위도 동성 간의 성적 행위 못지않게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군인 간의 성적 행위가 군대의 성적 건강을 해치거나 군의 기강을 확립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면 는 이성 간의 행위와 동성 간의 행위에 차이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동성 간의 성적 행위만을 처벌하는 것은 평등원칙 상 타당하지 않다.

나아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위계·위력 여부, 당사자 간 합의 여부, 업무시간 중에 행하여진 것인지 휴가·외출·외박 등 업무시간 외에 행하여진 것인지, 영내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영외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등 군인 간 성적 행위의 태양을 세밀하게 구별하지 않은 채 행위별 비난가능성의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2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하도록 구별한 것 또한 평등원칙에 반한다.

3. 방론 - 심판대상에 관하여

위헌법률심판 대상이 무엇인지는 헌법재판소의 고유한 판단영역이라고 보므로, 심판대상에 관하여 방론으로 덧붙인다.

이 사건 공소 제기된 피고인들의 행위태양에 항문성교행위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 중 직접적인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것은 “그 밖의 추행” 부분이다. 그런데 “그 밖의 추행” 부분은 이른바 일반조항으로, 이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그보다 앞부분에 이른바 예시적 입법형식으로 규정된 행위태양인 “항문성교”를 기본적으로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 것이 불가피하다. 나아가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법관으로서는 이처럼 법률해석의 기준이 되는 “항문성교” 부분에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그 합헌성이 인정되어야만 이를 전제로 “그 밖의 추행”이라는 더욱 일반화된 행위태양의 합헌성 또한 검토할 수 있으며, 그러한 후에야 비로소 “그 밖의 추행” 부분의 법률해석을 거쳐 피고인에 대한 형벌 부과 여부 및 양형을 판단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 중 “그 밖의 추행” 부분은 물론 “항문성교” 부분도 군인 간의 합의된 성적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헌법에 반한다는 점에서 다르지 않다고 보인다. 즉 이 사건 법률조항 중 “그 밖의 추행” 부분의 합헌성은 물론 “그 밖의 추행”을 해석하는 데 필요불가결한 전제가 되는 “항문성교” 부분의 합헌성에 상당한 의심이 들기 때문에, “항문성교” 부분의 위헌 여부가 선결되지 않고서는 피고인들의 행위를 “그 밖의 추행”에 포섭하여 유죄로 판단하고 형벌을 부과할지 여부로 나아가 판단하는 것이 매우 어렵게 된다.

형벌은 강력하고도 강제적으로 피고인들의 기본권을 제한하므로 형벌법규는 가능한 명확하여야 하고, 따라서 형사재판에 있어서 법관의 형벌조항 해석 또한 한층 엄격

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으므로, 균형법 제92조의6의 전반적인 위헌성이 검토된다면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의 합헌적 법률해석에 크게 도움이 됨은 물론 수범자들의 형벌법규에 대한 예측가능성 또한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4.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헌법의 기본원리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있어서도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과잉금지원칙,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범죄일람표 1

순번	일시·장소	내 용
1	2015. 6. 26. ○○ 시 ○○구 ○○동 ○○○번지 ○○빌 라 ○○○동 ○○ ○호	김○○의 발기된 성기를 손으로 붙잡고 위 아래로 흔들며 김○○으로 하여금 사정을 하게 하여 추행
2	2015. 7. 초순 일자 불상 경, ○○도 ○○시 ○○면 ○ ○○리에 있는 소속 부대 생활관	김○○과 서로 상대방의 팬티 안에 손을 집어넣은 채, 상대방의 발기된 성기를 손으로 주물러 추행
3	2015. 8. 초순 일자 불상 23:30경, ○○ 도 ○○시 ○○면 ○○리에 있는 소 속부대 생활관	김○○과 서로의 몸을 더듬으면서 상대방의 팬티 안에 손을 집어넣어 상대방의 발기된 성기를 손으로 주무르고, 피고인은 김○○의 발기된 성기를 손으로 붙잡은 뒤 위아래로 흔들며 주었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사정을 하게 하여 추행
4	2015. 11. 초순 일 자불상 23:30경, ○ ○○도 ○○시 ○○ 면 ○○○리에 있는 소속부대 생활관	김○○과 서로의 몸을 더듬으면서 상대방의 팬티 안에 손을 집어넣어 상대방의 발기된 성기를 손으로 붙잡은 채 위아래로 서로 흔들며 준 뒤, 피고인이 김○○의 발기된 성기를 입으로 빨아 구강성교를 해주었고 김○○ 하여금 피고인의 입에 사정을 하게 하여 추행
5	2015. 12. 초순 일 자불상 23:00경, ○ ○○도 ○○시 ○○ 면 ○○○리에 있는 소속부대 생활관	김○○과 서로의 몸을 더듬으면서 상대방의 팬티 안에 손을 집어넣어 상대방의 발기된 성기를 손으로 붙잡은 채 위아래로 서로 흔들며 준 뒤, 피고인이 김○○의 발기된 성기를 입으로 빨아 구강성교를 해주었고 김○○ 하여금 피고인의 입에 사정을 하게 하여 추행
6	2015. 12. 중순 일 자불상 23:00경, ○ ○○도 ○○시 ○○ 면 ○○○리에 있는 소속부대 생활관	김○○과 서로의 몸을 더듬으면서 상대방의 팬티 안에 손을 집어넣어 상대방의 발기된 성기를 손으로 붙잡은 채 위아래로 서로 흔들며 준 뒤, 피고인이 김○○의 발기된 성기를 입으로 빨아 구강성교를 해주었고 김○○ 하여금 피고인의 입에 사정을 하게 하여 추행
7	2015. 12. 말 일자 불상 23:30경, ○○ 도 ○○시 ○○면 ○○리에 있는 소 속부대 생활관	김○○과 서로의 몸을 더듬으면서 상대방의 팬티 안에 손을 집어넣어 상대방의 발기된 성기를 손으로 붙잡은 채 위아래로 서로 흔들며 준 뒤, 피고인이 김○○의 발기된 성기를 입으로 빨아 구강성교를 해주었고 김○○ 하여금 피고인의 입에 사정을 하게 하여 추행

8	2016. 1. 말 일자불상 23:00경, ○○도 ○○시 ○○면 ○○리에 있는 소속 부대 생활관	김○○과 서로의 몸을 더듬으면서 상대방의 팬티 안에 손을 집어넣어 상대방의 발기된 성기를 손으로 붙잡은 채 위아래로 서로 흔들여 준 뒤, 피고인이 김○○의 발기된 성기를 입으로 빨아 구강성교를 해주었고 김○○ 하여금 피고인의 입에 사정을 하게 하여 추행
9	2016. 3. 말 일자불상 23:30경, ○○도 ○○시 ○○면 ○○리에 있는 소속 부대 생활관	김○○과 서로의 몸을 더듬으면서 상대방의 팬티 안에 손을 집어넣어 상대방의 발기된 성기를 손으로 붙잡은 채 위아래로 서로 흔들여 준 뒤, 피고인이 김○○의 발기된 성기를 입으로 빨아 구강성교를 해주었고 김○○ 하여금 피고인의 입에 사정을 하게 하여 추행
10	2016. 4. 중순 일자불상 23:30경, ○○도 ○○시 ○○면 ○○리에 있는 소속부대 생활관	김○○과 서로의 몸을 더듬으면서 상대방의 팬티 안에 손을 집어넣어 상대방의 발기된 성기를 손으로 붙잡은 채 위아래로 서로 흔들여 준 뒤, 피고인이 김○○의 발기된 성기를 입으로 빨아 구강성교를 해주었고 김○○ 하여금 피고인의 입에 사정을 하게 하여 추행
11	2015. 5. 14. 23:30경, ○○도 ○○시 ○○면 ○○리에 있는 소속부대 생활관	김○○과 서로의 몸을 더듬으면서 상대방의 팬티 안에 손을 집어넣어 상대방의 발기된 성기를 손으로 붙잡은 채 위아래로 서로 흔들여 준 뒤, 피고인이 김○○의 발기된 성기를 입으로 빨아 구강성교를 해주었고 김○○ 하여금 피고인의 입에 사정을 하게 하여 추행

범죄일람표 2

순번	일시·장소	내용
1	2015. 6. 26. ○○시 ○○구 ○○동 ○○○번지 ○○빌라 ○○○동 ○○호	최○○이 피고인의 발기된 성기를 손으로 붙잡고 위 아래로 흔들게 하였고 피고인은 사정을 하여 추행
2	2015. 7. 초순 일자 불상 경, ○○○도 ○○시 ○○면 ○○○리에 있는 소속부대 생활관	최○○과 서로 상대방의 팬티 안에 손을 집어넣은 채, 상대방의 발기된 성기를 손으로 주물러 추행
3	2015. 8. 초순 일자 불상 23:30경, ○○○도 ○○시 ○○면 ○○○리에 있는 소속부대 생활관	최○○과 서로의 몸을 더듬으면서 상대방의 팬티 안에 손을 집어넣어 상대방의 발기된 성기를 손으로 주무르고, 최○○은 피고인의 발기된 성기를 손으로 붙잡은 뒤 위아래로 흔들어 주었고 피고인은 사정을 하여 추행
4	2015. 11. 초순 일자 불상 23:30경, ○○○도 ○○시 ○○면 ○○○리에 있는 소속부대 생활관	최○○과 서로의 몸을 더듬으면서 상대방의 팬티 안에 손을 집어넣어 상대방의 발기된 성기를 손으로 붙잡은 채 위아래로 서로 흔들어 준 뒤, 최○○은 피고인의 발기된 성기를 입으로 빨아 구강성교를 해주었고 피고인은 최○○의 입에 사정을 해주어 추행
5	2015. 12. 초순 일자 불상 23:00경, ○○○도 ○○시 ○○면 ○○○리에 있는 소속부대 생활관	최○○과 서로의 몸을 더듬으면서 상대방의 팬티 안에 손을 집어넣어 상대방의 발기된 성기를 손으로 붙잡은 채 위아래로 서로 흔들어 준 뒤, 최○○은 피고인의 발기된 성기를 입으로 빨아 구강성교를 해주었고 피고인은 최○○의 입에 사정을 해주어 추행
6	2015. 12. 중순 일자 불상 23:00경, ○○○도 ○○시 ○○면 ○○○리에 있는 소속부대 생활관	최○○과 서로의 몸을 더듬으면서 상대방의 팬티 안에 손을 집어넣어 상대방의 발기된 성기를 손으로 붙잡은 채 위아래로 서로 흔들어 준 뒤, 최○○은 피고인의 발기된 성기를 입으로 빨아 구강성교를 해주었고 피고인은 최○○의 입에 사정을 해주어 추행
7	2015. 12. 말 일자 불상 23:30경, ○○○도 ○○시 ○○면 ○○○리에 있는 소속부대 생활관	최○○과 서로의 몸을 더듬으면서 상대방의 팬티 안에 손을 집어넣어 상대방의 발기된 성기를 손으로 붙잡은 채 위아래로 서로 흔들어 준 뒤, 최○○은 피고인의 발기된 성기를 입으로 빨아 구강성교를 해주었고 피고인은 최○○의 입에 사정을 해주어 추행

8	2016. 1. 말 일자불상 23:00경, ○○도 ○○시 ○○면 ○○리에 있는 소속 부대 생활관	최○○과 서로의 몸을 더듬으면서 상대방의 팬티 안에 손을 집어넣어 상대방의 발기된 성기를 손으로 붙잡은 채 위아래로 서로 흔들어 준 뒤, 최○○은 피고인의 발기된 성기를 입으로 빨아 구강성교를 해주었고 피고인은 최○○의 입에 사정을 해주어 추행
9	2016. 3. 말 일자불상 23:30경, ○○도 ○○시 ○○면 ○○리에 있는 소속 부대 생활관	최○○과 서로의 몸을 더듬으면서 상대방의 팬티 안에 손을 집어넣어 상대방의 발기된 성기를 손으로 붙잡은 채 위아래로 서로 흔들어 준 뒤, 최○○은 피고인의 발기된 성기를 입으로 빨아 구강성교를 해주었고 피고인은 최○○의 입에 사정을 해주어 추행
10	2016. 4. 중순 일자불상 23:30경, ○○도 ○○시 ○○면 ○○리에 있는 소속부대 생활관	최○○과 서로의 몸을 더듬으면서 상대방의 팬티 안에 손을 집어넣어 상대방의 발기된 성기를 손으로 붙잡은 채 위아래로 서로 흔들어 준 뒤, 최○○은 피고인의 발기된 성기를 입으로 빨아 구강성교를 해주었고 피고인은 최○○의 입에 사정을 해주어 추행
11	2015. 5. 14. 23:30경, ○○도 ○○시 ○○면 ○○리에 있는 소속부대 생활관	최○○과 서로의 몸을 더듬으면서 상대방의 팬티 안에 손을 집어넣어 상대방의 발기된 성기를 손으로 붙잡은 채 위아래로 서로 흔들어 준 뒤, 최○○은 피고인의 발기된 성기를 입으로 빨아 구강성교를 해주었고 피고인은 최○○의 입에 사정을 해주어 추행